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함의

성문주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A Review and Impli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Revision

Moonju Se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학폭법) 내용을 소개하여 학폭법의 더 나은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성과로 2004년 학폭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학폭 관련 업무 가중 문제, 학교의 재심 기관 이원화로 인한 심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2019년 개정된 학폭법은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의 피로도를 해결하고, 학교폭력심의기구를 일선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전문심의위원회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향후 학폭법의 과제는 기존의 사법적 접근 중심에서 교육적 접근을 더 확대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폭법, 학폭위, 교육적 접근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amend of the School Violence Act. The School Violence Act was introduced in 2004 and it has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n. However, the latest revision in 2019 was important and meaningful. The Act began to get a stance of educational approaches to school violences. It has more emphasized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approach. For example, the newly revised School Violence Act allows principles of schools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cases in a condition of minor violence cases when victim students and parents agree with. This is an impressive change. The School Violence Act is still on going change and it should be changed more educational perspectives to deal with school violences.

Key Words :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Act, Minor violence, Educational approach, Judicial punishment

1. 서론

1990년대 초 청소년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청소년들

의 단순한 일탈 또는 장난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에 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제정되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적 개입의 길이 마련되었다.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18.

*Corresponding Author : Moonju Seong(mjseong@nsu.ac.kr)

Received January 4,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31,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학폭법이 도입되면서 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정책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법적인 틀에서 규정되고 제도화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학교 재량권의 부재, 학폭 재심 이원화 등으로 인한 고충이 커지고, 이로 인해 학교 기능의 마비와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교사,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3].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2일에 개정된 학폭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이 대폭 반영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개정된 학폭법에서 핵심적으로 개선된 점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여 학폭법의 더 나은 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학교폭력실태

2.1 학교폭력의 정의

학폭법이 도입되면서 가져온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이다. 즉 징계와 처벌의 기준이 되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수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이다. 학폭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따돌림, 폭력, 금품갈취 등에 대해 소수 일탈 청소년의 문제로 여겨져 교육현장에서 선도, 정학, 퇴학 등의 교육적 선도과 징계 등 학교 자체 해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그 수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한 것이다[4].

학폭법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5]. 학폭법의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경제적 손해만이 아니라 왕따로 불리는 따돌림도 포함하며, 최근 증가하는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 따돌림을 설명하면,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장소는 학교만이 아니라 집, 학원, 음식점, 사이버 공간 등 학교 내외를 모두 포함하며, 타 학교 학생과의 폭력도 포함된다.

2.2 학교폭력 실태

학폭법 제정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태조사에는 미신고 학교폭력도 포함되어 폭넓은 학교폭력 실태를 알 수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다음 Fig. 1과 같다.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12.3%(17만 2천명)가 학교폭력의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학교폭력의 피해응답률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여(2.3%)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피해응답률은 약 1%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최근 실태조사에서는 1.6%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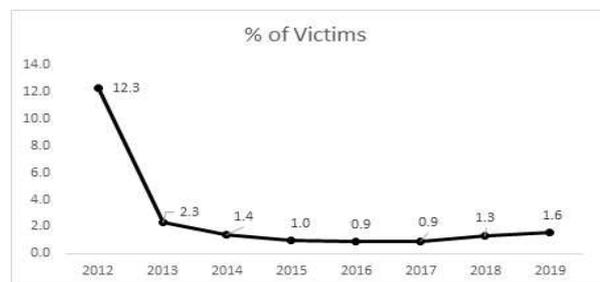


Fig. 1. Percentages of School victims, 2012-2019
Source: Ministry Education(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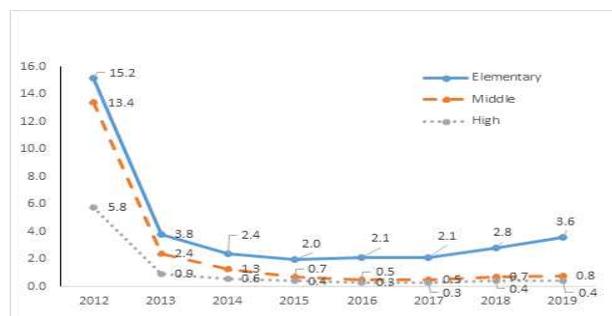


Fig. 2. Percentages of School victims by school levels
Source: Ministry Education(2019)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Figure 2에서 제시하고 있다. 2012년- 2019년 기간 동안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피해응답률을 보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다. 2012년 초등학교 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15.2%, 중학교 13.4%, 고등학교 5.8%였다. 2019년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3.6%, 중학교 0.8%, 고등학교 0.4%로 대폭 감소하였지만 피해 응답률은 여전히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6].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3년 이후 감소되고 약 1%대에서 유지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학교폭력 피해 유형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학폭법의 학교폭력 정의에 근거하여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 금품갈취, 성추행·성폭행, 강제심부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1은 2013-2019년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이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피해 유형의 2013-2019년 연도별 변화는 금품갈취, 강제심부름이 감소하고,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성추행, 성폭행이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금전적, 신체적 구속 등의 물리적인 학교폭력 유형에서 언어적, 정신적인 비물리적 방법에 의한 피해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 유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유형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언어폭력 경험 학생의 27.0%가 집단따돌림을, 12.8%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6].

Table 1. School violence types, 2013-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erbale harassment	34.0	34.6	33.3	34.0	34.1	34.7	35.6
group bullying	16.6	17.0	17.3	18.3	16.6	17.2	23.2
cyber bullying	9.1	9.3	9.2	9.1	9.8	10.8	8.9
stalking	9.2	11.1	12.7	10.9	12.3	11.8	8.7
physical assault	11.7	11.5	11.9	12.1	11.7	10.0	8.6
demanding money	10.0	8.0	7.2	6.8	6.4	6.4	6.3
forced errand	6.1	4.7	4.2	4.3	4.0	3.9	4.9
sexual harassment	3.3	3.8	4.2	4.5	5.1	5.2	3.9

Source: Ministry Education(2019)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전체의 69.5%, 학교 밖이 30.5%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주로 교실이

30.6%, 복도 14.5%로 교실과 복도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학교 밖의 경우 놀이터(5.6%), 사이버공간(5.4%), 학교 밖q 체험(5.0%), 학원주변(4.2%), 집(4.2%), PC노래방(0.9%)이다.

학교급별 피해 장소 차이는 학교 밖에서 두드러지는데, 초등학생은 주로 놀이터가 가장 많았지만(6.7%), 중고등학생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가 가장 높았다. 가해이유로는 먼저 괴롭혀서가 초등학생의 경우 3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장난, 오해와 갈등이다. 중학생은 장난이 22.3%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은 장난, 먼저 괴롭혀서가 각각 18.5, 18.3%로 비슷하다[6]. 이와 같은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볼 때,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7-8].

3. 학폭법 개정 내용

3.1 개정 배경

학폭법이 처음 도입된 2004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잦은 개정은 학폭법이 교육현장,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여론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법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대상이며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학폭법은 피해자, 가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초중고 학교 소속이기에 교육현장이 사건의 발생지이며 해결지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학폭법 심의 절차나 징계, 재심은 사법적인 형식을 따르기에 교육현장과 사법적 형식과 절차의 간극이 큰 것이 가장 문제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를 시도하는 교사는 사법적인 판단에서는 학교폭력 축소나 은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담당 교사에 대한 불신,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운영되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9-11].

초중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를 보면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4년 만에 76% 급등하였고, 재심 청구도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2.5배 증가하였다[10]. 이처럼 학폭위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

하고, 또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과 행정처리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2019년 학폭법이 개정되게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3.2 핵심 개정 내용

1) 학교급별 자치위원회에서 관할구역 시교육지원청으로 심의 담당 변경

개정 전 학폭법에서는 학교별 학폭위가 구성되고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해당 또는 공동 학폭위(1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처분을 결정하였다. 학폭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8인으로 구성된 학폭위라면 이 중 최소 4명은 학부모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학교장과 교사 각 1인이 최소로 참여할 때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명인 것이다. 이처럼 학폭위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전문 기구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 심리·상담, 법률적 전문가의 구성 비율이 매우 낮아 학폭위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개정된 학폭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즉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구성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춰 전문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교사가 사법적인 틀에서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교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교육 일선 현장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교육 현장의 업무 가중과 피로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도 도입

학교장에게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적인 지도와 선도를 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

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에 제약이 컸었다. 즉 교육현장의 의무와 책임, 재량권이 훼손되어 학폭법 본연의 목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구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12].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하였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기때 학교장의 재량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학폭법 제13조2장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신고나 보고가 있어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본조신설 2019. 8. 20)에 해당한다. 만일 가해자가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자체해결 뒤에도 학폭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된 학교장 자체 해결 도입은 학교 기능이 마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다. 2019년 9월부터 도입되어 아직 정책의 효과를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경미한 사안일 경우 당사자 간의 화해와 선도를 학교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재심 기구 일원화

개정 전 학폭법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를 이원화했다. 피해학생은 시·도 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은 시·도 학생징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조건도 전학과 퇴학의 경우만 가능하고, 이외의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는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 기구가 이원화되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과 사정이 재심기구가 이원화되면서 서로 상반되는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학폭법은 피해, 가해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학폭심의위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는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학폭법 제17조2항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에

의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신설되었다(신설 2019. 8. 20.).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행정 절차가 일원화되어 행정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개선으로 보인다.

4)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법적 징계 완화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일선 학교와 해당 기관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245% 증가하였고, 교육청 행정심판은 동기간 247건에서 643건으로 260% 증가하였다[13]. 학폭위 재심에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낮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 완화나 무죄를 청구하는 재심이 대부분이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 때문이다. 경미한 사안일 경우 기존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였고, 그 외에는 졸업 2년 후 삭제되었다. 생활기록부 삭제를 목적으로 학폭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로 추가 징벌을 하는 것이 이중 처벌이라는 문제라는 제기도 있어왔다[14-17].

이에 따라 경미한 징계인 경우, 처분 1호-3호,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 유예하도록 개정하였다. 만일 동일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되면 유보한 기록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와 선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선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개정 내용이다. 가해학생 징계 중 1호에서 3호의 내용은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봉사(3호)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로 구분되며 각 0점에서 4점의 점수 기준을 갖는다. 따라서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도 가해학생의 징계는 조치 없음을 제외하고는 서면사과가 제일 낮은 경우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교육적 선도의 측면을 강조한 개정으로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생활기록부 삭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재심 청구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필요한 재심 청구로 인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4. 결론

학폭법이 2019년 8월 일부 개정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 다른 폭력과의 차이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여 피할 수 없는 환경이며, 전학, 자퇴, 퇴학 등이 아닌 이상 졸업 때까지 지속한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4]. 그러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대책과 예방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비교육적인 절차와 처벌 문제, 교육 현장의 업무 가중, 재심 절차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개정된 학폭법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특히 학교장의 자체 해결권은 학교폭력의 발생현장, 가해·피해학생이 학교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학폭법이 지나치게 사법적 접근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교육적 접근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보이듯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의 미성숙성, 미발달된 사회성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접수된 자체만으로 사법적인 틀에서 가해자·피해자로 구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학폭위에서 진술 등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크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각 학교단위 학폭위에서 상급기관인 해당 교육청 학교폭력심의회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이관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개정된 학폭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9년 8월 개정된 학폭법의 핵심 방향은 관계 회복적, 교육적 접근을 보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학폭법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수위가 성인 폭력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해지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신체적 폭력에서 점점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더 높아져가고 있다. 개정된 학폭법이 학교폭력의 1차 사안 조사, 심의, 처분, 재심 등의 행정적 절차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 대두될 문제는 다

양해진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해학생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처분 1호-3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유예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학폭법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등의 법적인 전문위원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 청소년분야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풀로 구성될 때 청소년이라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 점이 지속된다면 학폭법의 사법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균형 있게 작용하여 학교폭력의 실질적인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M. I. Kwon. (2012). The Usefulness of Social Welfare Approach i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 Journal of Probation & Parol*, 12(2), 1-32.
- [2] Y. S. Ha. (2018).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 *Dong-A Law Review*, 78, 405-429.
- [3] C. I. Cheon & S. W. Chong. (2013).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s in Schools: Focused on Education, Prevention and Recovery Functio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The Journal of Ethics*, 25(1), 205-229.
- [4] H. T. Jeong. (2011). A Plan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Conflict Solution: Character Educational Approach, *The Journal of Ethics Studies*, 1(83), 123-162.
- [5]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0).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s in Schools.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901#0000>
- [6] Ministry Education. (2019). Report of School Violence in 201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46&lev=0&m=02>
- [7] Y. M. Song. (2019). Bullying Experience of School Bullies on Convergence Stud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2), 349-359. DOI.org/10.15207/JKCS.2019.10.2.349
- [8] H. Moon & H. S. Kang. (2018).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ocio-Ecologic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421-428. DOI.org/10.15207/JKCS.2018.9.12.421
- [9] O. G. Kwon. (2013). A Study on the Act of the Prevention and Measure to the School Viol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43, 79-102.
- [10] H. J. Lee. (2017).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Procedures for School Violence,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28(3), 215-251.
- [11] J. K. Han. (2018). A Study on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i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Journal of Public Society*, 8(1), 131-161.
- [12] J. H. Park. (Sep, 28, 2018). Seoul Daily Newspaper. <http://www.seoul.co.kr>
- [13] Y. J. Lee, C. H. Lee, J. M. Kang & S. H. Lee. (2014).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Restorative Justice Model as a Means to Resolve of School Violence,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4] S. A. Yang. (Jan, 31, 2019). Hankyoreh Daily Newspaper. <http://www.hani.co.kr>
- [15] K. S. Shin. (2014). The Study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viewed through the cases of administrative appeal, *Kangwon Law Review*, 41, 647-686.
- [16] E. K. Yun. (2015). The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rticles to Perpetrator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Kangwon Law Review*, 46, 457-493.
- [17] K. S. Kim. (2016). A Study on Possible Human Rights Abuse caused by the School Violence Act, *European Constitution*, 21, 433-455.

성 문 주 (Seong, Moonju)

[정회원]



- 2000년 9월 : University of York (사회정책, 석사)
- 2001년 7월 : University of Oxford (사회학, 석사)
- 2008년 2월 : University of Oxford (사회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정책, 교육, 여성, 가족
- E-Mail : mjseong@nsu.ac.kr